

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산업건설위원회 (2015. 3. 9.)

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— 목 차 —

의안번호	건 명	페이지
2015 ~ 8	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	1

거창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5. 2. 23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 일자: 2015. 2. 24.
- 라. 상정및의결일자: 2015. 3. 5.

2. 제안이유

-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설명: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
- 나. 위치: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25-1
- 다. 주요시설

시설내역	면적	세 부 내 역	비고
체험(과원)시설	7ha	- 사과과원: 1.5ha - 오미자과원: 0.25ha - 공원시설, 기타: 5.25ha - 관리동: 1동(207㎡)	

라. 위탁대상 사무

- 과원시설(사과, 오미자): 시설관리 및 사과나무분양, 꽃나들이축제, 사과수확행사 등
- 공원시설: 시설관리, 예취작업, 수목관리, 쓰레기수거, 공원 주변 환경정비 등
- 관리동 및 기타 부속시설 유지관리

마. 위탁기간: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

- 위탁기간 만료 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

바. 위탁자격: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기술보유, 책임 능력과 공신력 있는 법인, 단체, 기관 또는 개인

사. 선정방법: 공개모집,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
아. 소요예산: 없음

- 시설사용료를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비 제외한 수익의 30% 거창군에 납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규
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[대통령령 제24463호]
 - 민간위탁 기준 제시
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 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.
 -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공개모집, 인력,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 선정

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 - 제2조(의회동의)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.
-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
 - 제15조(위탁운영) 법인, 단체,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근거 제시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동의안은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과·오미자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,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, 기관 등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
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“군수가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라고 규정되어 있음
-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

기구, 재정 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7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8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9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요지: 해당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